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교육감의 관장사무에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 >

■ 김민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081호)

2024. 11.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교육감의 관장사무에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민전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4. 10. 30.

3. 회부연월일 : 2024. 10.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 체계가 이원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보육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었는데, 이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 보육사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므로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교육감 관장사무에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시·도 및 시·군·구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이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유아 보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20조 및 제3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79호),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 교육감의 관장사무에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

개정안은 유보통합으로 시·도 및 시·군·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 보육사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므로, 교육감 관장사무에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감의 영유아 보육사무 관장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20조 및 제35조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u>교육·과학·기술·체육</u>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교육·보육·과학·기술·체육</u> ————— ————— ————— ————— —————.
제2조(교육·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u>교육·과학·기술·체육</u>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제2조(교육·학예사무의 관장) ——— ————— <u>교육·보육·과학·기술·체육</u> ——— —————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u> —————.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	제20조(관장사무) —————

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 8. (생략) <u><신설></u> 9. ~ 17. (생략)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u>공·사립의</u>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생략)	-----. 1. ~ 8. (현행과 같음) <u>8의2.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u> 9. ~ 17. (현행과 같음)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 -----. 1. <u>어린이집, 공·사립</u>----- ----- ----- ----- 2. (현행과 같음)
---	--

정부는 유치원·어린이집으로 교육과 돌봄 기관이 이원화되어 기관 선택에 따라 서비스의 질 차이로 영유아 시기부터 교육·돌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애 초기 영유아 단계부터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로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정한 출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어 유보통합을 추진하였음.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2023.12.26. 일부개정, 2024.6.27. 시행)으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던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였고, 교육부는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24.6.27.)에 따라 5대 상향평준화 과제,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 및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1) 등을 추진 중임.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 중 하나인 “지방 관리체제 일원화”는 기관 간 균형적인 질 제고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해 시·도 및 시·군·구의 영유아보육 업무·재정 등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유보통합으로 시·도 및 시·군·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 보육사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교육감 관장사무에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해당 사무를 교육감이 관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교육부, 2024.6.27.

- 5대 상향평준화 과제
: 충분한 이용시간 및 일수 보장,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통합연수체계 마련,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
: 편리하고 공정한 입학방식 마련, 통합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 교사 처우 개선 등, 영유아 교육과정 개발·적용, 설립·운영 기준 마련
-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
: 지방 관리체제 일원화, 효율적 지원 기반 마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 지방 관리체제 일원화

- (개요) 기관 간 균형적인 질 제고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해 시도/시군구청의 영유아보육 업무·재정 등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지방관리체제 일원화 추진
- (이관방식) 일괄 이관(광역·기초 일괄)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기관·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이관방안 확정
- (재정이관) 국고 대응투자(‘23년 기준, 약 3조) 및 지자체 시책사업예산(‘23년 기준, 약 2조)은 그 성격(필수적 경비)에 따라 이관 추진
※ 세부 이관내용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 결정
- (이관시점) 24년 말까지 업무·재정 이관을 위한 법률 개정*을 완료하되, 경과 기간을 두어 안정적인 이관 추진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 일괄 개정
- 특히 경과 기간 동안 ①후속 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 등 규정 정비, ②교육청-지자체 간 인력 교류, ③지역 내 실질적 유보통합 추진 기구로서 지역별 유보통합추진단 역할 강화 추진(‘24.~)
* 시·도/시·군·구/시·도교육청별 정원 조례,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보육 조례 등

이를 통해 그동안 유치원(교육청)과 어린이집(시·도 및 시·군·구)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지방 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따른 통합기관을 체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행정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제1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하며(제2조),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두고(제18조),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음(제20조).

개정안은 “보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포함함으로써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유치원과 같이 시·도 및 시·군·구에서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려는 유보통합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부칙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과 관련하여 각 개별법에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및 “교육·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보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및 “교육·보육·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있는데, 일부 누락사항²⁾이

있어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 부칙 제2조제3항³⁾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13조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의무와 관련하여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보육에 관한 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두었는데,

이는 보조금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사무에 관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보조금의 편성 등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영유아 보육에 관한 보조사업은 예산 편성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임을 명시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80호) 제15조는 영유아 보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신설⁵⁾과 관련하여, 영유

2) 「지방회계법」

제9조(교육·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분야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부”로, “지방재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각각 본다.

3) 부 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과학”을 “교육·보육·과학”으로 한다.

제1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보육에 관한 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으로 한다.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본다.

③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80호)

아보육 관련 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비로 부담하는 국고대응예산 경비
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일반회계예산에 편성하여 교육비특별회계
로 전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해 교육부는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수행 사무에 따라
재원(재정)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재정중립원칙에 따라 교육청으로 이
관되는 보육사무만큼 재정도 함께 이관되어야 하고, 기존 보육재정이
어린이집 운영 경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재정이 이관되지 않는 경
우 기존 보육서비스 누수가 우려되므로, 한정적인 재정 여건 내에서
기관 간,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재원 투입은 기존 보육
재정이 안정적으로 이관되는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는 의견임.

반면, 지방자치단체(경기도,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등)는 보육사무
의 주체는 교육부로 그 보조사업에 대한 비용은 사업을 위임받아 수
행하는 교육청에서 부담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92

제15조(영유아 보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시·도 및 시·군·구는 이 법 공포 당시(법률 제○○○○○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해당 시·도 및 시·군·구가 영유아 보육 사무를 위하여 부담하던 다음 각 호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일반회계예산에 편성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1.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영유아 보육을 위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비로 부담하는 경비.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 국고지원에 대응한 지방비는 제외한다.